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년월일 : 2000.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 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로 구분하여 관리함(안 제1조)
- 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함(안 제3조)
- 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안 제10조)
- 마.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표준조례안 【경북도 수질 58442-377(2000.3.16)】 호 1부

나. 관련법령(발췌)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영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부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 협회회의 결정에 의하되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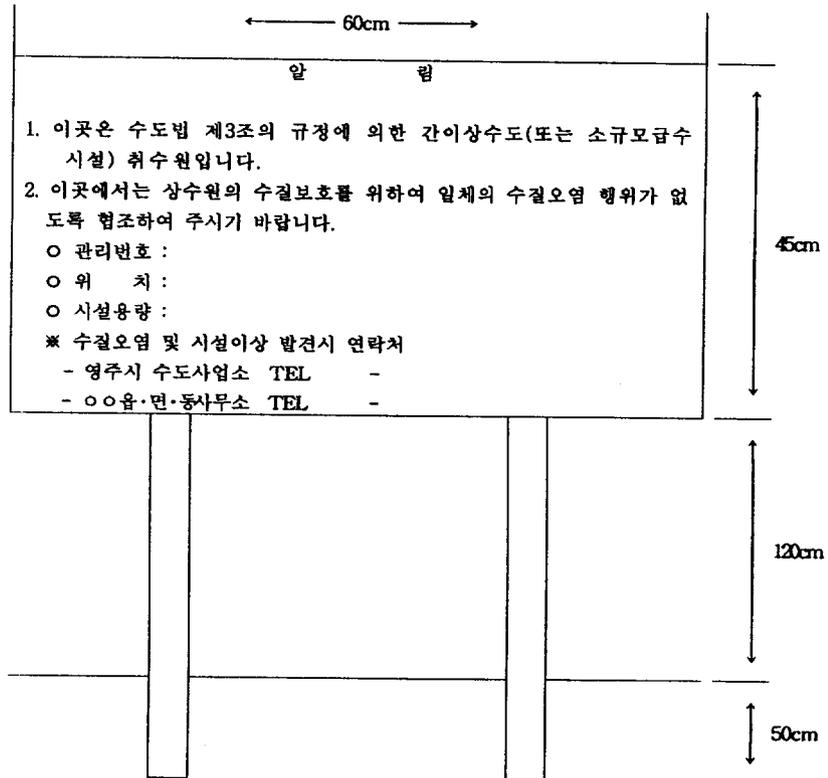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위임사무(권한위임)의 수도사업소 소관중 2. 간이상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 제1항 관련)



제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제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앞면)

관리번호	영주시 제 호											
구분	내역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읍·면·동 리·봉 마을											
일반현황	협의의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현황	총투자액 (단 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최초사업비			자재지원	현금지원	도비	시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내역	구분	재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집수정 1			양호	불량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내역	구분	재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총연장(m)			
			mm	m			mm	m				
		내용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총계: m				
급수현황	계획	급수인구: 명		급수기구: 기구		1인당 1일급수량: 리터						
	현재	급수인구: 명		급수기구: 기구		1인당 1일급수량: 리터						
	제한급수	1차:		2차:		3차:		계: 일간				
수질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뒷면)

시설변동내역

변동년월일	변 동 사 항	변 동 내 용

수리계통도

【별지 제2호서식】

##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 제7조 제1항 관련 )

관리번호	영 주 시 제 호	점검일자 : .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1.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2.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3.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4.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5.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6.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7. 오염물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8. 기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 제7조 제1항 관련 )

관리번호	영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별지>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

소관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주택과	<현행과 같음>			
수 도 사업소	1. <현행과 같음>  2.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및 대장작성 보관  2.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 보호시설 의 설치  3. 수질검사 및 개 선 조치  4. 간이급수시설 점검 및 기록보존  5. 간이급수시설 유 지·보수  6.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의 위탁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4조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5조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7조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9조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22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3.~4.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u> 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lt;신 설&gt;</p> <p>2.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u> 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1. ....</p> <p>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p> <p>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3. “사용자”라 함은 <u>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u></p> <p>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u>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u></p>	<p>4. ……………<u>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u></p> <p>5. …………… ……………<u>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u> ……………</p>
<p>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u>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증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p>	<p>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u>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증·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p>
<p>제 2 장 <u>간이상수도의 관리</u></p> <p>제4조(간이상수도관리·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u>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u></p> <p>②관리자는 <u>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u></p>	<p>제 2 장 <u>시설의 관리 및 보수</u></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u>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u></p> <p>②…………… <u>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u> …………… <u>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b>【별표1】</b>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관리자는 <b>간이상수도시설</b>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b>간이</b> 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b>【별표】</b>에 의하여 .....</p> <p>②..... <b>간이급수시설</b> .....</p> <p>.....</p> <p>.....</p> <p>.....</p> <p>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 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7조(점검) ①.....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p> <p>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유지보수) ①시설의 개·보수는 협의회의 자체관리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정의 인입관 및 수도전의 비용은 당해 사용자가 부담한다.</p>	<p>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지사유서</li> <li>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li> <li>3. 폐지후 급수대책</li> <li>4. 관리대장</li> </ol> <p>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관리비용</p> <p>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영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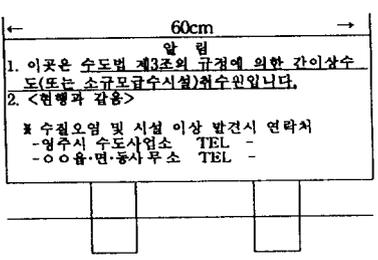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제18조(관리비의 징수) ①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관리비는 협의회 의 회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p> <p>③관리비 징수·지출등 관리에 관하여는 협의회 의 결정에 의하되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p>	<p>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 협의회 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자 와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p>
<p>제19조(회계년도) 협의회 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p>	<p>&lt;삭 제&gt;</p>
<p>&lt;신 설&gt;</p> <p>제 3 장 사용자 대표협의회</p> <p>제11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마을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p> <p>제 4 장 사용자 대표협의회</p> <p>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구성)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장 1인</li> <li>2. 부회장 2인</li> <li>3. 위원 5인이상</li> </ol> <p>②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으며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p> <p>②협회의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p> <p>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p> <p>④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li> </ol>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li> <li>3.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자에게 전달</li> <li>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18조(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이급수시설.....</li> <li>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li> <li>3.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대한.....</li> <li>4. ....</li> <li>5. ....</li> </ol>

현행	개정안
<p>제14조(위원의 선출) ①협회의의 위원은 사용자중에서 선출하며 선출결과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p> <p>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15조(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p> <p>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삭 제&gt;</p>
<p>제16조(회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p> <p>1. 관리자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p> <p>&lt;신 설&gt;</p> <p>2. 협의회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9조(개최) ① .....</p> <p>.....</p> <p>1. 관리자의.....</p> <p>.....</p> <p>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p> <p>3. ....대표자가.....</p> <p>.....</p> <p>&lt;삭 제&gt;</p> <p>②.....</p> <p>.....시장에게 통보.....</p>

현행	개정안
<p>제17조(감사) ①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협회에 감사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감사는 년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보 칙</p> <p>&lt;신 설&gt;</p> <p>&lt;삭 설&gt;</p> <p>제6조(관리의 위탁) ①관리자는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회에 간이상수도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 칙</p> <p>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협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p> <p>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협의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p> <p>③관리인은 협의회 제청에 의거 관리자가 임명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③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시행규칙).....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1】</b>  <b>간이상수도 안내판(제7조제1항 관련)</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알 림</p> <p>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p> <p>2. &lt;생 략&gt;</p> <p>※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p> <p>- 영주시 수도사업소 TEL -</p> <p>- ㅇㅇ읍·면·동사무소 TEL -</p> </div>  <p>재질 및 두께: 10mm 내외의 합판                  바탕 색: 흰 색                  글 색: 청 색</p>				<p><b>【별표】</b>  <b>간이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 60cm →</p> <p style="text-align: center;">알 림</p> <p>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취수원입니다.</p> <p>2. &lt;현행과 같음&gt;</p> <p>※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p> <p>- 영주시 수도사업소 TEL -</p> <p>- ㅇㅇ읍·면·동사무소 TEL -</p> </div>  <p>재질 및 두께: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 색: 흰 색                  글 색: 청 색</p>						
<p><b>【별지 제1호서식】</b>  <b>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제4조제2항관련)</b>                  (앞면)</p>				<p><b>【별지 제1호서식】</b>  <b>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b>                  (앞면)</p>						
관리번호		영주시 제 - - 호		관리번호		영주시 제 호				
구분	항목	내 역		구분	항목	내 역				
일반	위치	<생 략>		일반	위치	<현행과 같음>				
	관리 대표자	<생 략>			현의회 대표자	<현행과 같음>				
	준공년월 일	<생 략>			준공년월 일	<현행과 같음>				
시설 현황	<생 략>		<현행과 같음>		시설 현황	<현행과 같음>				
	수원의종 류- 경수시설		<생 략>			수원의종 류- 경수시설		<현행과 같음>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중별총 연장(m)
			관중	관경				연장	관중	
	내용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총계		mm	mm	mm	mm	mm	mm	계: m		
급수현 황-수 원이전	<생 략>		<현행과 같음>		급수현 황-수 원이전	<현행과 같음>				
※시설폐지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뒷면) 시설면동내역				..... (뒷면) 시설면동내역						
<생 략>				<현행과 같음>						
수리계통도				수리계통도						
<생 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b>【별지 제2호서식】</b>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제5조제1항 관련)				<b>【별지 제2호서식】</b>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영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점검일자 : .....	
조사및확인 항목	검 사 일		특기사항및조치결과	.....	.....	점검일자:소속 직 성명	
	월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참소	소독기				1.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				2.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				3.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				4.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				5.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파 손				6.소독시설의 운영·관리 상태		
오염원 제거	취수원 부근				7.오염물 제거	.....	
	배수지 부근				.....		
주: 수질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			담당자	8.기 타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b>【별지 제3호서식】</b>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장(제5조제2항 관련)				<b>【별지 제3호서식】</b>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영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일자 : .....	
전 검 함 목		점검내용	점검자	확인자	전검항목	전검결과	조치사항
1. 소독시설 유무					1.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2.수원으로부터 반경20M 이내의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2.수원으로부터 반경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의 유무		
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의 유독성물질(중장폐수 등)의 유무					3.수원으로부터100m이내 유독성물질(중장폐수 등) 의 유무		
4.저수탱크 누수 여부					4.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5.저수탱크 이물질 유입 유무					5. ....		
6.의관(뽕새, 색, 탁도)은 양 호한가?					6.의관(뽕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7.기타 조치사항					<사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				
소관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총무과 ~ 주택 과 수 도 사업소	<생략>  1. <생략>  2. 간이상 수도에 관 한 다음의 권한				총무과 ~ 주택 과 수 도 사업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간이급 수시설에 관한 다음 의 권한			
		1. 간이상수 도 관리 및 대장작성보관 조	•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4 조	읍 · 면장			1. 간이급수 시설…………… …………… 의 권한	•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 시설관리조례 제4조	……… ………
		4. 보호시설 의 설치	•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7 조	읍 · 면장			2. 간이급수 시설의 취 수원 보호 시설의 설치	•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 시설관리조례 제5조	……… ………
		5. 간이상수 도시설에 대 한 보수등의 개선조치	•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8 조	읍 · 면장			3. 수질검사 및 개선 조 치	•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 시설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 ………
		2. 간이상수 도시설의 점 검 및 기록 보존	•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5 조	읍 · 면장			4. 간이급수 시설 점검 및 기록보존	•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 시설관리조례 제7조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				
소관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6. 간이상수 도시철의 유 지보수	·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9 조	읍· 면장			5. 간이급수 시설..... .....	· 간이상수도 ..... · 소규모급수 ..... 시설관리조례 제9조	
		3. 간이상수 도 유지관리 의 위탁 및 관리인 임명	·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6 조	읍· 면장			6. 간이급수 시설 유지 관리의 위탁	· 간이상수도 ..... · 소규모급수 ..... 시설관리조례 제22조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발췌)

### 【수 도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백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 13. <생 략>

13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4. ~ 24. <생 략>

제19조(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간이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소규모급수시설) ①시장·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원수의 수질을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수도법 제19조제1항·제37조의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 1)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 2) 별표 1중 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산칼륨소비량 및 중발잔류물에 관한검사 : 매주 1회 이상
- 3)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월 1회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별표 1중 일반세균·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검사 : 매분기 1회이상

②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 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이상
2. 별표 1중 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중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이상

③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한다.

④일반수도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진단) ①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한자 및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는 장티프스·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발생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 종사하는 자 및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 : 매 6월마다 1회
2.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제1호외의 종업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관할보건소 또는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제1항의 질병으로 한다.

##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례 명 :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50호(2000년 9월 8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0년 9월 8일 ~ 2000년 9월 27일(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 의안검토보고서

### 1. 의안

- 의안번호 : 제149호
- 의안명 :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수도사업소

### 2. 제안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로 구분하여 관리함. (안 제1조)
- 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함. (안 제3조)
- 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 (안 제10조)
- 마.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사.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수도법 개정('97. 8.28)으로 당초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동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에 의거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경상북도 수질 58442-377(2000. 3.16)호에 의한 간이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한 것이고
- 합리적 수질관리 및 이용주민의 위생향상을 위해 시설의 관리(안 제3조),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안 제6조 및 제7조) 등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2000. 11.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